

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

사 건 2000고단 000호 00

피고인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 ○○○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(또는 녹음장치의 사용)로 하여금 필기(녹취)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(6	★ N 대한법률구조공단
or.kr	
- 형	
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	
신청권자	· 피고인 또는 변호인· 검사· 법원의 직권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56조의 2
기 타	· 피고인,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 여야 함.		